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엄혜숙)

#### 가. 제안이유

- 안전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실효성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성상 민간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협치·공유하고자 구성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3조)
- 위원의 해촉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협의회 활성화를 고려하고 안전 발생빈도가 적은 사항등을 고려한 법 개정(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기능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의2에서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의의 소집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회의 소집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8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민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공유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협의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사항 등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의 해촉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 등 회의 운영 사항 개정(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 10. 25. ~ 11. 7. / 14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학교보건·지역보건·산업안전 관계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p> <p>1. 2. (생략)</p> <p>3. <u>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제3조(구성) ① <u>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③ <u>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과 구민·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제2조(기능)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u>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u>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u></p> <p>2. <u>지역주민 대표</u></p> <p>3. <u>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u></p> <p>4. <u>학교보건·지역보건·산업안전 관계자</u></p>

〈신 설〉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전

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